

대전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8가합1051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1. A

2. 주식회사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호

피고1. 주식회사 C

2. D

3. 주식회사 E

4. 주식회사 F

피고 2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변론 종결2020. 12. 9.

판결 선고2021. 2. 3.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7,06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8. 10.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E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3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F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4 채권을 피고 주식회사 C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원고 A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 및 원고 주식회사 B의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이 부담하고, 원고 A과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A이 부담하며, 원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 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D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원고 A에게,
 - 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2 금원, 피고 D은 89,151,333원,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226,181,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나.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4 채권을, 피고 F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5 채권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에게, 피고 D, E, F은 각자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3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 비 적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1. 피고 D과 피고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채무변제계약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1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 E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6 채권을, 피고 D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7 채권을, 피고 F은 별지 1 목록 기재 순번 8 채권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G과 피고 C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토목, 건축 공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 C은 2015. 2. 10.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충북 H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일부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1.부터 2015. 12. 31.까지, 공사금액을 4,950,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들의 거래관계 등

1) 원고 A은 2015. 9. 24. 피고 C의 대표이사 1 명의 은행계좌로 3회에 걸쳐 293,600,000원을 입금하였다.

2) 아스콘 제조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 B은 2016. 3. 22.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7,063,810원 상당의 아스콘 등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피고 C과 피고 D 사이의 채무변제계약 체결 등

1) 피고 C과 피고 D은 2016. 5. 20. '피고 C이 피고 D에게 부담하고 있는 공사대금 채무 2,500,000,000원을 2016. 5. 27.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을 하였고, 위 피고들의 작성 촉탁에 따라 당일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J사무소 작성 2016년 증서 제2516호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이하 위 채무변제계약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피고 D은 2016. 6.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2016타채6475호로 피고 C이 G에 가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2,501,529,900원으로 하여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6. 6. 10.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G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전부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 D의 피고 E, F에 대한 각 채권양도 등

1) 피고 D은 2016. 5. 31. 피고 E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1,000,000,000을 '피고 E은 C의 5월과 6월 지급만기일인 어음(합계 744,984,000원)을 대위 변제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2016. 6. 22. G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2) 피고 D은 2016. 6. 1. 피고 F에게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중 290,000,000원을 '피고 F은 피고 C의 6월 4일 어음금 124,949,000원, 7월 21일 어음금 56,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09,051,000원 및 추가로 공사대금 지급만기일인 어음금(합계 29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고 2016. 6. 22. G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3)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승인은 2016. 6. 23. 이루어졌고, 한편 피고 C은 2016. 7. 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마. G의 금원지급 및 공사대금 공탁 등

- 1) G은 피고 D, E, F 등과 사이에 G이 지급해야 할 채무를 총 1,950,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2018. 6. 5.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위 피고들에게 합계 943,66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돈 중 피고 D이 89,161,333원, 피고 E이 628,307,334원, 피고 F이 226,191,333원을 각 받았다.
- 2) G은 2018. 6. 20. 대전지방법원 2018년 금 제3515호로 피고 D, E, F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불확지를 이유로 위 1,950,000,000원 중 기 지급한 943,6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6,340,000원을 공탁하였다.
- 3) 원고들은 2018. 8. 17. 채무자 피고 D, E, F,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378호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공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

바. 관련 민사사건

K 외 3명은 피고 D, E, F을 상대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5129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 8.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K 외 3명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 D, E, F이 대전고등법원 2020나106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20. 8. 20. 항소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다262540호로 상고하였으나 2020. 12. 10.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D, E, F: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0, 11호증, 을 제7, 8, 23호증(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1) 원고 A은 2015. 9. 24.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대여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7.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은 2016. 3. 22.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피고 C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7,063,810원 상당의 아스콘 등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 B에게 물품대금 27,063,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10.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3. 원고들의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 E, F의 본안 전 항변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 A은 원고 B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피고 C의 대표이사 남편인 L과 친분이 있으므로, 위 피고들이 G과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등과 관련한 소송계속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위 피고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또한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권자취소권의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의 체결사실과 그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들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하므로 원고 A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나, 피보전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소가 부적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음).

나. 원고 A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과 피고 C 대표이사 I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이 피고 C에게 이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원고 A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나) 그런데 갑 제1, 9호증 및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A이 피고 C에 3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이 피고 C에 대해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 A은 2015. 9. 24. 피고 C의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I 개인계좌로 합계 293,600,000원(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300,000,000원과 금액도 일치하지 않음)을 송금하였음을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돈 중 일부만 피고 C의 계좌로 입금되었고(위 일부 입금된 돈에 대해서는 피고 C과 I와 사이에 별도의 법률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대부분이 I에 의해 다른

곳에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원고 A이 I 개인계좌로 입금한 위 돈에 대해 피고 C에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 A이 I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②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차용증 등 대여라고 볼만한 문서가 작성된 바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 C의 대표이사 I 남편인 L이 작성한 갑 제9호증의 확인서만으로는 원고 A이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한편 원고 A은 대여금 300,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C로부터 주식회사 M이 발행한 액면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 3매를 교부받았고, 당시 피고 C이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고 주장한다(소장 제3, 4쪽 참조). 그러나 위 약속어음이 원고 A이 주장하는 대여금 300,000,000원에 대한 담보로 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고, 피고 C이 배서한 약속어음은 2매로서 그 약속어음 액면금(합계 200,000,000원)도 대여금이라 주장하는 300,000,000원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 C이 위 약속어음 2매에 대해 배서한 사정만으로 원고 A이 피고 C에게 3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 소결 위와 같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300,000,000원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위 피고들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B의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은 피고 C에 대해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은 물품대금 27,063,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대해 가) 무자력 여부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한편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C의 2015년 재무제표(을 제25호증)1)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으로 피고 C의 자산총계는 4,636,435,029원, 부채총계는 1,658,229,571원, 자본총계(자본금 + 이익잉여금)는 2,978,205,458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2,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말미암아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란 회사가 실제 부담하는 채무 총액과 실제 가치로 평가한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기재된 명목상 부채 및 자산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27847 판결 등 참조), 피고 C의 2015년 재무제표 내용만으로 당연히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고 할 것은 아니다.

② 피고 C은 2016. 7. 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고 2016년도 부도어음 합계가 약 25억 원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단순히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그 이후에 피고 C의 재무상태가 좋았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움), 위 당시 재무상태나 자력이 매우 좋지 않았다고 보인다.

③ 피고 C의 2015년 재무제표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C의 자산(4,636,435,029원)은 대부분 유동자산(3,883,022,442원)으로서 그 중 3,587,411,234원은 변제 및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외상매출금 채권인데, 위 재무제표의 기재만으로 위 채권의 거래처, 종류, 변제기, 담보제공 여부 등(을 제2호증의 거래처원장은 을 제1호증에 대한 것이고 을 제25호증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기 어렵고, 또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재산이라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한편 피고 C의 2015년 재무제표에 따른 부채는 1,658,229,571원인데, 위 부채에 포함되지 아니한 관련 확정 민사판결에서 인정된 K, N, 주식회사 O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518,423,460원(갑 제11호증의 35의 제10, 11쪽)과 원고 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27,063,810원을 더하면 부채는 합계 2,203,716,841원이 되는데, 여기에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으로 말미암아 피고 C이 부담하게 된 채무 총액 2,500,000,000원을 더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됨은 계산상 명확하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1)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채무에 관한 특정의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한 별도의 계약인 이른바 채무변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3388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① 위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 체결 무렵 피고 C에 대해 피고 D은 2억 원, 피고 E은 약 14억 4,000만 원, 피고 F은 약 2억 9,000만 원, 주식회사 P은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권(위 각 채권의 합계 약 21억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 D이 대표로 그 채권 합계액을 초과한 피고 C이 피고 D에게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G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점, ② 피고 D은 위 공정증서 작성일(2016. 5. 20.)로부터 11일 후인 2016. 6. 1. G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2,501,529,900원에

관한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점, ③ 피고 D은 이 사건 전부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16. 5. 31. 피고 E에게 위 전부채권 중 10억 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 피고 F에게 위 전부채권 중 2억 9,000만 원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④ 피고 C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2016. 7. 4. 당좌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점, ⑤ G이 2018. 6. 20. 피고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1,006,340,000원을 공탁함에 따라 실제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전부명령에 기하여 위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 C이 피고 D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형식을 빌어 위 피고들의 채권을 사실상 우선변제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에 기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이 행하여지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원인이 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C은 위 채무변제계약으로 원고들 등 일반 채권자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위 피고들은, 피고 C이 부도어음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위 어음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 피고들로부터 1,064,984,000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위 피고들 2020. 12. 7.자 준비서면 제18, 19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그에 기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은 피고 C의 책임재산인 G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채권을 특정 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해 줌으로써 우선 변제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에게 추가적인 자금을 융통해주어 피고 C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 피고들의 선의항변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피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들도 피고 C로부터 자신들의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 D은 피고 E, F을 대표하여 피고 C과 사이에 G에 대한 잔존 공사대금채권 전액 상당인 2,500,000,000원을 자신이 변제받기로 하는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한 점, ③ 위 피고들과 피고 C과의 관계 및 금전 거래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들은 피고 C의 재산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추정을 뒤집고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454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으로서의 가액배상이 허용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채무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B에 관해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1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약의의 수익자인 피고 D과 약의의 전득자인 피고 E, F은 이에 따른 각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원상회복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G이 피고 D, E, F에 지급할 공사대금채무를 총 1,950,000,000원으로 합의한 후 위 피고들이 G로부터 합계 943,66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나머지 1,006,340,000원에 대하여는 G이 공탁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 B이 공탁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탁금 1,006,340,000원 중 피고 D이 570,818,667원, 피고 E이 371,702,666원, 피고 F이 63,818,667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원고 B의 피보전채권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이

가지는 위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피고 C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달리 위와 같은 방법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각 공탁물출급청구권 중 피고 D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2 채권을, 피고 E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3 채권을, 피고 F은 별지 2 목록 기재 순번 4 채권을 피고 C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대전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각 위 채권양도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위 원상회복방법과 관련하여 가액배상을 구하는 원고 B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 A의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 D, E, F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률

판사고영식

판사김주연

별지

1) 위 피고들은 을 제1호증의 재무상태표는 가결산 자료이므로, 관할 세무관청에 신고된 을 제25호증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무자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따라 무자력 여부를 판단한다.